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양군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민간의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1/2 이상,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해당 지방의 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및 퇴직공무원 2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의 자격요건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각호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간위원 자격요건 1)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¹⁾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0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의 위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배분을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이장협의회」는 등록단체가 아님

촉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1/2 이상, 여성위원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 추천 위촉위원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관계 규정을 위배하여 부적법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함

그러나 양양군에서는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위원 구성 위촉시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단체의 장인 이장협의회 회장을 위촉(2012. 9. 13.~2015. 9. 13. 양양군 이장협의회 회장 ○○○, 2015. 9. 14.~감사일 현재까지, 양양군 ○○ 이장협의회 회장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제4호를 위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사위원회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 이장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7명(당연직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명)

※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2013. 1~2015. 11. 27)

- 개최횟수 총 64회(서면회의 40회)

조치할 사항 양양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재위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